

[별표 4의2] <개정 2006.12.30>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1.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삭제 <2005.6.30>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구간별 점수표

()은 점수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남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이상 50세미만 (6.6)	—	—	—
	여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3.0)	25세이상 3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4.3)	20세이상 25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5.2)	—	—	—
재산(만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1,500 초과 3,000 이하 (7.2)	3,000 초과 7,500 이하 (9.0)	7,500 초과 15,000 이하 (10.9)	15,000 초과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3.0)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6.1)	10만원 초과 21만원 이하 (9.1)	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12.2)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15.2)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18.3)	66만원 초과 (21.3)

비고 :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초과 ~ 600이하	380	36	6,560초과 ~ 6,960이하	1,407
2	600초과 ~ 700이하	409	37	6,960초과 ~ 7,380이하	1,443
3	700초과 ~ 800이하	437	38	7,380초과 ~ 7,840이하	1,481
4	800초과 ~ 900이하	466	39	7,840초과 ~ 8,320이하	1,520
5	900초과 ~ 1,000이하	494	40	8,320초과 ~ 8,820이하	1,560
6	1,000초과 ~ 1,100이하	523	41	8,820초과 ~ 9,360이하	1,601
7	1,100초과 ~ 1,200이하	552	42	9,360초과 ~ 9,930이하	1,643
8	1,200초과 ~ 1,300이하	580	43	9,930초과 ~ 10,600이하	1,687
9	1,300초과 ~ 1,400이하	609	44	10,600초과 ~ 11,200이하	1,731
10	1,400초과 ~ 1,500이하	637	45	11,200초과 ~ 11,900이하	1,776
11	1,500초과 ~ 1,600이하	666	46	11,900초과 ~ 12,600이하	1,823
12	1,600초과 ~ 1,700이하	695	47	12,600초과 ~ 13,400이하	1,871
13	1,700초과 ~ 1,800이하	723	48	13,400초과 ~ 14,200이하	1,920
14	1,800초과 ~ 1,900이하	752	49	14,200초과 ~ 15,000이하	1,969
15	1,900초과 ~ 2,020이하	780	50	15,000초과 ~ 15,800이하	2,020
16	2,020초과 ~ 2,140이하	809	51	15,800초과 ~ 16,600이하	2,247
17	2,140초과 ~ 2,270이하	838	52	16,600초과 ~ 17,400이하	2,474
18	2,270초과 ~ 2,410이하	866	53	17,400초과 ~ 18,300이하	2,714
19	2,410초과 ~ 2,560이하	895	54	18,300초과 ~ 19,200이하	2,969
20	2,560초과 ~ 2,710이하	923	55	19,200초과 ~ 20,100이하	3,224
21	2,710초과 ~ 2,880이하	952	56	20,100초과 ~ 21,100이하	3,494
22	2,880초과 ~ 3,050이하	981	57	21,100초과 ~ 22,100이하	3,777
23	3,050초과 ~ 3,240이하	1,009	58	22,100초과 ~ 23,200이하	4,074
24	3,240초과 ~ 3,430이하	1,038	59	23,200초과 ~ 24,400이하	4,400
25	3,430초과 ~ 3,640이하	1,066	60	24,400초과 ~ 25,600이하	4,740
26	3,640초과 ~ 3,860이하	1,095	61	25,600초과 ~ 26,800이하	5,080
27	3,860초과 ~ 4,100이하	1,124	62	26,800초과 ~ 28,200이하	5,449
28	4,100초과 ~ 4,350이하	1,152	63	28,200초과 ~ 29,500이하	5,831
29	4,350초과 ~ 4,610이하	1,181	64	29,500초과 ~ 31,000이하	6,228
30	4,610초과 ~ 4,890이하	1,209	65	31,000초과 ~ 32,500이하	6,653
31	4,890초과 ~ 5,190이하	1,240	66	32,500초과 ~ 34,100이하	7,092
32	5,190초과 ~ 5,500이하	1,271	67	34,100초과 ~ 35,800이하	7,559
33	5,500초과 ~ 5,840이하	1,303	68	35,800초과 ~ 37,600이하	8,055
34	5,840초과 ~ 6,190이하	1,336	69	37,600초과 ~ 39,400이하	8,565
35	6,190초과 ~ 6,560이하	1,371	70	39,400초과	9,104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100초과 - 450이하	22	26	22,700초과 - 25,300이하	637
2	450초과 - 900이하	44	27	25,300초과 - 28,100이하	659
3	900초과 - 1,350이하	66	28	28,100초과 - 31,300이하	681
4	1,350초과 - 1,800이하	97	29	31,300초과 - 34,900이하	706
5	1,800초과 - 2,250이하	122	30	34,900초과 - 38,800이하	731
6	2,250초과 - 2,700이하	146	31	38,800초과 - 43,200이하	757
7	2,700초과 - 3,150이하	171	32	43,200초과 - 48,100이하	785
8	3,150초과 - 3,600이하	195	33	48,100초과 - 53,600이하	812
9	3,600초과 - 4,050이하	219	34	53,600초과 - 59,700이하	841
10	4,050초과 - 4,500이하	244	35	59,700초과 - 66,500이하	873
11	4,500초과 - 5,020이하	268	36	66,500초과 - 74,000이하	905
12	5,020초과 - 5,590이하	294	37	74,000초과 - 82,400이하	937
13	5,590초과 - 6,220이하	320	38	82,400초과 - 91,800이하	972
14	6,220초과 - 6,930이하	344	39	91,800초과 - 103,000이하	1,012
15	6,930초과 - 7,710이하	365	40	103,000초과 - 114,000이하	1,049

16	7,710초과 - 8,590이하	386	41	114,000초과 - 127,000이하	1,084
17	8,590초과 - 9,570이하	412	42	127,000초과 - 142,000이하	1,125
18	9,570초과 - 10,700이하	439	43	142,000초과 - 158,000이하	1,168
19	10,700초과 - 11,900이하	465	44	158,000초과 - 176,000이하	1,207
20	11,900초과 - 13,300이하	490	45	176,000초과 - 196,000이하	1,244
21	13,300초과 - 14,800이하	516	46	196,000초과 - 218,000이하	1,290
22	14,800초과 - 16,400이하	535	47	218,000초과 - 242,000이하	1,336
23	16,400초과 - 18,300이하	559	48	242,000초과 - 270,000이하	1,380
24	18,300초과 - 20,400이하	586	49	270,000초과 - 300,000이하	1,429
25	20,400초과 - 22,700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이상	372

6. 그밖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